

제 3 1 4 호

1972. 11. 15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75-6444. 6090

시 보

차 례

◎ 공 고

제 251 호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 3

제 252 호 도시계획 공원일부 변경 3

◎ 사 령 4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공 고

㉞ 서울특별시공고제 251 호

1. 72.9.26 서울특별시 공고제 216 호로 계획변경 공고한바 있는 망우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에정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합니다.

2. 환지에정지변경 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 또는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11. 13.

서울특별시장

㉞ 서울특별시공고제 252 호

도시계획공원일부변경

당시 관내 성동구능동(서울 칸추리크럼부지) 일부지역의 능동 아동공원이 건설부고시 제 472 호(72. 11. 6) 로 일부변경 결정고시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.

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11. 13.

서울특별시장

1. 공원변경조서

공 원 명	위 치	기 정 면 적	변 경 면 적	변 경 후 면 적
능 동 아 동 공 원	서울성동구능동	700,885 m^2	(감) 339,240 m^2 (증) 20,343 m^2	382,388 m^2

2. 풍치지구조서

지 구 명	위 치	면 적 (m^2)
능 동 풍 치 지 구	성 동 구 능 동	339,240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(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및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.)

사 령

◎ 1972.11.13.

아 동 과 행정 사무관 변 회 남

서 기 관 에 임 함 .

3 호 봉 을 급 함 .

서울특별시보건사회국 아동과장
에 보 함 .

아파트관리과장 지방서기관 신 현 석

서 기 관 에 임 함 .

3 호 봉 을 급 함 .

서울특별시주택관리관실 아파트

관리과장에 보 함 .

◎ 1972.11.14

도 시 가 스 시 광행정서기로 장 등 하
사 업 소

인 사 214-3021(72.10.27) 발령

제 74호 중 도 시 가 스 사업소

근 쿠 를 동 일 자 로 취 소 함 .

서울특별시